

「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낙관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미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1. 18. ~ 11. 23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 정착 및 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 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진학 지원·모범 대상자 장학금 지급·직업훈련·교화 및 개선 프로그램 지원에 자원을 집중한다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속한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어,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